

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 경위

- 가. 제 안 자 : 지관근 의원 등 16인
- 나. 의안번호 : 제2513호
- 다. 제 안 일 : 2011. 5. 6
- 라. 회 부 일 : 2011. 5.16

2. 제안 이유

-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%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 제1항)
- 나.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연구활동비 최대지원액을 제한 함(안 제15조 제2항)
- 다.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,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5조 제3항)

- 라.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5조 제4항)
- 마.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5조 제4,5항)
- 바.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성남시의회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도록 함.(안 제16조 존속기한)

4. 검토 의견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의안 성립에 대한 검토

- 현행 「지방자치법 제22조」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」에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
- 소속 상임 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에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 된 본 개정 조례안은 그 개정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며
-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

1/5이상(7인)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의안으로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.

나. 연구활동비 지급 관련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 제15조제1항에서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%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각 의원연구단체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「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」(행정안전부령 제194호)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연구활동비 지원근거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(예산편성목 번호 205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설정 내용 참조)

의정운영공통경비

1.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『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』로 정한 금액
2.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, 위로금,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
3.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 가능함
4. 집행할 수 없는 경비
 - 가. 의원 개인 명의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
 - 나.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
 - 다.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편성·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·집행할 수 없음(단,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)

○ 그러나,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“의정운영공통경비”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「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기준액이 아래 표와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지원에 이를 지출할 경우 그만큼 타 의정활동운영부분에 활용할 예산액이 적어져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은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.

-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
 - 시·도의회 : 의원 1인당 6,100천원(예결특위 위원 1인당 2,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)
 - 시·군·구 의회 : 의회의원 1인당 4,800천원
(예결특위 위원 1인당 1,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)
 - ※ 증액편성 :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%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
- 2011년도 우리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편성액 : 187,464천원
 - 일반의원 : 5,136천원 × 34명 = 174,624천원
 - 예결위의원: 1,070천원 × 12명 = 12,840천원
 - ※ 연구단체에 5% 지원 시 소요예산액 : 9,373천원
- 2010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율
 - 예산액 : 187,464천원 • 집행액 : 182,522천원 • 잔액 : 4,942천원 • 집행율 : 97.4%

- 또한 연구활동비 지원범위를 “의정운영공통경비의 5% 범위 내”로 제한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예산지원 근거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세부계획이나 방침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.
- 그 밖에 조례 개정안 제15조 각항 본문에 “지급 할 수 있다.” 지급 받은“ 등으로 표현된 “지급”의 사전적 의미는 “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준다.”거나 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을 채권자에게 준다.”는 의미이므로 “지지하여 도움”이라는 의미의 “지원”으로,
- 그리고 조례 개정안 제15조 제3항의 내용 중 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”는 위원회에서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“로 하여 심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